

## 환경성 표시 · 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실시 안내문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해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를 관리하고 있으며, 동법 제16조의 10에 의거,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품의 환경성 개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재질을 사용하였다거나 특정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았거나 법적 최소기준을 근거로 “친환경” 등을 주장하는 것은 대표적인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환경성 표시·광고를 위반했을 경우 표시광고한 자(제조·판매업체)는 중지명령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공정한 친환경제품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하여 온라인 환경성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제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판매 중인 제품의 “친환경” 등 표현에 대한 근거가 없을 경우 즉시 자진 시정을 요청드리며, 이후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품 관련 환경성 표시·광고 시정 필요사항 (요가매트)

- **제품의 환경성 개선에 대한 근거 없는 “친환경” ⇒ 문구 삭제**
  - 친환경에 대한 근거(제품의 제조·소비·폐기 전 과정을 고려한 환경성 개선)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특정 재질(EVA, TPE, 코르크 등)을 사용해서 “친환경” ⇒ 문구 삭제**
  - 특정 재질을 사용한 것만으로 “친환경”을 주장할 수 없으며, 제품의 제조·소비·폐기 전 과정을 고려한 환경성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포함하지 않아 “친환경” ⇒ 문구 삭제**
  - 특정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것만으로 “친환경”을 주장할 수 없으며, 제품의 제조·소비·폐기 전 과정을 고려한 환경성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친환경” ⇒ 문구 삭제**
  - 공인기관의 시험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것을 사실 그대로 표시하여야 하며(예: 납, 수은 불검출 등), 시험성적서를 인증서로 기재하여 친환경, 인체 무해 등을 주장하는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합니다.

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녹색제품정보시스템(<http://www.greenproduct.go.kr>)

환경성 표시·광고 제도 안내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제품 관련 환경성 표시·광고 시정 필요사항 (아동용 실내화 등)

○ **제품의 환경성 개선에 대한 근거 없는 “친환경” ⇒ 문구 삭제**

- 친환경에 대한 근거(제품의 제조·소비·폐기 전 과정을 고려한 환경성 개선)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무독성’ 제품이라는 근거로 “친환경” ⇒ 문구 삭제**

- ‘무독성’은 포괄적인 환경성 표현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험성적서 결과 등 구체적인 범위 내 표시하여야 합니다.

○ **특정 재질(EVA, 천연고무 등)을 사용해서 “친환경” ⇒ 문구 삭제**

- 특정 재질을 사용한 것만으로 “친환경”을 주장할 수 없으며, 제품의 제조·소비·폐기 전 과정을 고려한 환경성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 **특정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아 “친환경”, “무독성” ⇒ 문구 삭제**

-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것을 사실 그대로 표시하거나 특정 인증 또는 시험법에 따른 유해물질 불검출 또는 기준 적합 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법적 의무기준을 근거로 “친환경” ⇒ 문구 삭제**

- 법적 의무기준(안전확인신고서 등)은 법적 의무기준을 준수한 것이므로 친환경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으며 해당 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성 개선에 대한 구체적 근거 없이 ‘친환경’ 주장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합니다.

제품 관련 환경성 표시·광고 시정 필요사항 (학용품 등)

○ 제품의 환경성 개선에 대한 근거 없는 “친환경” ⇒ 문구 삭제

- 친환경에 대한 근거(제품의 제조·소비·폐기 전 과정을 고려한 환경성 개선)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무독성’ 제품이라는 근거로 “친환경” ⇒ 문구 삭제

- ‘무독성’은 포괄적인 환경성 표현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험성적서 결과 등 구체적인 범위 내 표시하여야 합니다.

○ 특정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아 “친환경”, “무독성” ⇒ 문구 삭제

-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것을 사실 그대로 표시하거나 특정 인증 또는 시험법에 따른 유해물질 불검출 또는 기준 적합 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법적 의무기준을 근거로 “친환경” ⇒ 문구 삭제

- 법적 의무기준(안전확인신고서,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 시험성적서 등)는 법적 의무기준을 준수한 것이므로 친환경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으며 해당 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성 개선에 대한 구체적 근거 없이 ‘친환경’ 주장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합니다.



AP 인증 (ACMI - AP)

미국미술과창작재료학회(The Art & Creative Materials Institute, Inc.)에서 아동용 미술 재료와 제품을 대상으로 독성 평가에서 인증된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에 해당하며 미국 유해 예술 재료법 및 ASTM D 4236에 따름



잘못된 사례

AP인증과 함께 NON-TOXIC(무독성)이라는 표시·광고는 잘못된 사례에 속함

제품 관련 환경성 표시·광고 시정 필요사항 (유아용·어린이용 장난감 등)

- **제품의 환경성 개선에 대한 근거 없는 “친환경” ⇒ 문구 삭제**
  - 친환경에 대한 근거(제품의 제조·소비·폐기 전 과정을 고려한 환경성 개선)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무독성’ 제품이라는 근거로 “친환경” ⇒ 문구 삭제**
  - ‘무독성’은 포괄적인 환경성 표현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험성적서 결과 등 구체적인 범위 내 표시하여야 합니다.
- **특정 재질(원목, 식약청 승인 재질 등)을 사용해서 “친환경” ⇒ 문구 삭제**
  - 특정 재질을 사용한 것만으로 “친환경”을 주장할 수 없으며, 제품의 제조·소비·폐기 전 과정을 고려한 환경성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 **특정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아 “친환경”, “무독성” ⇒ 문구 삭제**
  -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것을 사실 그대로 표시하거나 특정 인증 또는 시험법에 따른 유해물질 불검출 또는 기준 적합 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법적 의무기준을 근거로 “친환경” ⇒ 문구 삭제**
  - 법적 의무기준(안전확인신고서 등)은 법적 의무기준을 준수한 것이므로 친환경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으며 해당 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성 개선에 대한 구체적 근거 없이 ‘친환경’ 주장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합니다.

제품 관련 환경성 표시·광고 시정 필요사항 (유아용·어린이용 식기 등)

○ **제품의 환경성 개선에 대한 근거 없는 “친환경” ⇒ 문구 삭제**

- 친환경에 대한 근거(제품의 제조·소비·폐기 전 과정을 고려한 환경성 개선)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무독성’ 제품이라는 근거로 “친환경” ⇒ 문구 삭제**

- ‘무독성’은 포괄적인 환경성 표현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험성적서 결과 등 구체적인 범위 내 표시하여야 합니다.

○ **특정 재질(실리콘, 옥수수, 대나무 성분 등)을 사용해서 “친환경” ⇒ 문구 삭제**

- 특정 재질을 사용한 것만으로 “친환경”을 주장할 수 없으며, 제품의 제조·소비·폐기 전 과정을 고려한 환경성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 **특정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아 “친환경”, “무독성” ⇒ 문구 삭제**

-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것을 사실 그대로 표시하거나 특정 인증 또는 시험법에 따른 유해물질 불검출 또는 기준 적합 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법적 의무기준을 근거로 “친환경” ⇒ 문구 삭제**

- 법적 의무기준(안전확인신고서,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 시험성적서 등)는 법적 의무기준을 준수한 것이므로 친환경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으며 해당 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성 개선에 대한 구체적 근거 없이 ‘친환경’ 주장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합니다.